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 환경피해준비금의 운용 및 관리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작 성 자	이름	신훈철
	담당부서 (과)	환경피해구제과		직급	공업주사
	국장	조현수		연락처	044-201-6816
	과장	손삼기		이메일	shc0991@korea. kr

2025. 12. 30.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환경피해준비금의 운용 및 관리								
	2.규제조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3.위임법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5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1.12~2026.02.2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 기후부와 보험자가 체결하는 약정에 따라 보험자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에 따른 거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자와 국민에게 제도의 영속성과 예측 가능성 보장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8조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약정 체결 ○ 정부개입 필요성 － 환경오염사고는 발생빈도는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며 점진적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음 － 최근에는 공장 화재 진화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거나, 화학물질 누출에 따른 주변 농작물 피해 등 환경오염사고가 2개 이상으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나타남 ※ 구미 불산사고('12.9) 정부 지출 554억원, 경기도 위험물 화재('24.1) 150억원 이상 피해 － 환경책임보험의 총보험료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18년 783억원 → '25년 456억원 예상) 함에 따라 당해 보험료만으로 거대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사업자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7.규제내용	환경피해준비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1)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금을 은행예탁, 집합투자증권 및 유가증권 등 매입으로 운영토록 규정 2) 환경피해준비금의 운용 계획 및 결과 제출토록 하는 등 절차 명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환경책임보험 대표보험사 및 참여보험사</td><td>10개사</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환경책임보험 대표보험사 및 참여보험사	10개사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환경책임보험 대표보험사 및 참여보험사	10개사							
9.규제목표	대규모 사고 발생 시 거액의 보험금 지출에 대비해 적립된 환경피해준비금의 운용 및 관리에 사항을 규정하여 재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신속한 피해보상 및 사업자의 위험분산에 기여									
규제의	10.영향평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적정성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환경피해준비금의 관리(계획 수립 및 결과 제출 등)을 위한 행정인력 소요 5백만원/연 반영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0조의2(환경피해준비금의 운용 및 관리 등) ① 법 제18조의3제5항에 따라 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경피해준비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위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매입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 보험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매 정부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정부 회계연도의 환경피해준비금 운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 정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간 환경피해준비금의 운용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 기후부와 보험자가 체결하는 약정에 따라 보험자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에 따른 거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자와 국민에게 제도의 영속성과 예측 가능성 보장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8조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약정 체결

○ 정부개입 필요성

- 환경오염사고는 발생빈도는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며 점진적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음
- 최근에는 공장 화재 진화과정에서 인근 하천으로 화학물질이 유입되거나, 화학물질 누출에 따른 주변 농작물 피해 등 환경오염사고가 2개 이상으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나타남

※ 구미 불산사고(12.9) 정부 지출 554억원, 경기도 위험물 화재(24.1) 150억원 이상 피해

- 환경책임보험의 총보험료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18년 783억 → '25년 456억 예상) 함에 따라 당해 보험료만으로 거대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사업자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의 내용)

-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금을 은행예탁, 집합투자증권 및 유가증권 등 매입으로 운영토록 규정
- 환경피해준비금의 운용 계획 및 결과 제출토록 하는 등 절차 명시

○ (선택 근거) 대규모 환경오염피해 위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조성된 환경피해준비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방안 마련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24.12월, 대면	거대 환경사고에 대비한 환경피해준비금 적립	환경책임보험 약정서 변경('24.12)
보험자, 전문가	'24.12월, 대면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 마련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법적 근거 마련('25.11. 개정)
금감원 등	'25.1~5월, 대면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 마련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법적 근거 마련('25.11. 개정)

3. 규제목표

- 대기·수질·토양 오염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 등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신속한 피해 구제, 사업장의 위험 분산 및 환경책임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시행규칙 개정의 목적은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에 따른 거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된 환경피해준비금의 안정적 운용·관리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은행예탁 등의 관리·운용 방법을 규정하고 보험자에게 매년 환경피해준비금 운용계획 및 운용결과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볼 수 있어 비례적 타당성 인정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거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고 환경책임보험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조성된 환경피해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술규제와 관련 없음

- 경쟁영향평가

거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고 환경책임보험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조성된 환경피해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의 저촉사항이 없는 등 부당경쟁과는 관련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거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고 환경책임보험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조성된 환경피해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DB손해보험, 삼성화재, AIG 등 대기업 보험사임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환경책임보험과 유사한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경우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및 하위법령에서 보험재정 안정 등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보험사와 협의하여 약정을 통해 이미 환경피해준비금을 적립·운용하고 있어 준수 가능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보험사와 협의하여 약정을 통해 이미 환경피해준비금을 적립·운용하고 있어 충분히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정부기관 예산 미 발생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에 따른 거대 보험금의 지급에 대비하여 환경책임 보험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제도의 목적(신속한 피해구제, 사업장의 위험분산)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로 적립한 환경피해준비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규제를 갖춘 적절한 제도로 판단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환경피해준비금의 운용 및 관리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39.56		39.56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39.56		39.56
기업순비용		39.56	연간균등순비용	4.99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환경피해준비금의 운용 및 관리>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보험사		
활동제목	환경피해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연도	비용	비용(현재가치)
	2026	5,000,000	4,784,689
	2027	5,000,000	4,578,650
	2028	5,000,000	4,381,483
	2029	5,000,000	4,192,807
	2030	5,000,000	4,012,255
	2031	5,000,000	3,839,479
	2032	5,000,000	3,674,142
	2033	5,000,000	3,515,926
	2034	5,000,000	3,364,522
	2035	5,000,000	3,219,638
	합계	50,000,000	39,563,591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환경피해준비금의 관리(계획 수립 및 결과 제출 등)을 위한 행정 인력 소요 5백만원/연 반영		
근거설명	환경피해준비금의 관리(계획 수립 및 결과 제출 등)을 위한 행정 인력 소요 5백만원/연 반영		